

1. 개정이유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중 수산물의 생산·가공 시설과 지정해역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000호, 2023. 2. 28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, 지정해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고시, 지정해역의 지정 및 고시 등의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각각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8조제3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각각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법 제70조제2항”을 “제3항에 따라 생산·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, 법 제70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90조제1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알려야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”로 한다.

제132조제1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,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를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지정해역의 지정 등) ①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</u> 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 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 음 각 호와 같다.	제86조(지정해역의 지정 등) ①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 조사·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해역에 대하여 조사·점검을 한 결과 법 제69조에 따라 <u>국</u> <u>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</u> 이 정하 여 고시한 해역의 위생관리기 준(이하 “지정해역위생관리기 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</u> <u>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</u> <u>장</u> 에게 요청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</u> 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해역을 지정	④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

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.

1. 2. (생 략)

제88조(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·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·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.

1. 생산·가공시설: 법 제69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. 다만, 패류양식시설은 제8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88조(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-----
-- 해양수산부장관-----

-----.

지정해역에 있어야 한다.	-----.
2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: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<u>국립수산물품질관 리원장</u> 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	2. -----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 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	⑥ ----- <u>제3항에 따라 생산·가공시설 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 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 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야 하고, 법 제70조제2항</u> ----- -----.
제90조(조사·점검) ① 국립수산 과학원장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조사·점검결과를 종합하 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<u>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</u> 에게 알 려야 한다.	제90조(조사·점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 양수산부장관</u> 에게 보고해야--- 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2조(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 템의 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<u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</u> 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	제132조(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 템의 운영) ① ----- ----- <u>해양수산부장관</u> ----- -----

부 장관

②

해양수산부 장관

③ (현행과 같음)